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33,245,14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사해행위 일자를 2011. 4. 10.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등기부의 기재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한다는 등기예규(제438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B와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2011. 5. 25.경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기재는 2011. 5. 2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593,398원을 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B에게 고지되었다.

나. B의 모친인 C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B, E가 있었으며, 형제관계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C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형제들은 2011. 5. 25.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3/4, D가 1/4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B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부산진세무서는 2009. 10. 20. 동래세무서는 2011.



9. 7. B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마. 피고와 D는 C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D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D는 2011. 7. 19. 부산 동래구 F 6동 402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를 G에게 2억 2,700만 원에, 2012. 12. 10.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를 I에게 6억 6,000만 원에, 2012. 11. 23. 부산 동구 J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J 부동산'이라 한다)을 K와 L에게 6억 1,700만 원에, 2012. 10. 24. 시흥시 M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C의 지분(이하 '이 사건 M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N에게 377,454,545원(시흥시 M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13억 8,400만 원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금액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7,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7. 29. 원고 산하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 피고가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소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31. 동래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75, D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25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경 B가 C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B의 위와 같은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가 C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채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증언과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D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F아파트의 시가가 2억 2,700만 원, 이 사건 H아파트의 시가가 6억 6,000만 원, 이 사건 J 부동산의 시가가 6억 1,700만 원, 이 사건 M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377,454,5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 1,881,454,545원(= 2억 2,700만 원 + 6억 6,000만 원 + 6억 1,700만 원 + 377,454,545원)의 1/4에 해당하는 470,363,636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C의 예금채권이 693,082,452원, 임대차보증금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 441,556,43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차액인 251,526,022원 중 B의 상속지분에 1/4에 해당하는 62,881,506원(=251,526,022원 × 1/4)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533,245,142원(=470,363,636원 + 62,881,505원)이 된다(피고는 가액배상 할 금액에서 C의 사망에 따



라 납부한 상속세의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 장례비의 1/4에 해당하는 37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1/4에 해당하는 11,505,415원,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각한 다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4에 해당하는 13,802,8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33,245,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김태진

 판사 이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8-12

C의 재산 목록

피상속인	상속 재산	소재지	비고
C	부동산	부산 동래 F	상속권리자
		6동 402호	A1/4
		서울 용산 H아파트	D1/4
		104동 603호	B1/4
		경기 시흥 M 토지, 건물 중 C의 지분	E1/4
		부산 동구 J, O 토지, 건물	

피상속인	상속 재산	재산의 종류	금액	비고
C	금융재산	농협중앙회 부산대학교지점	693,082,452	상속권리자
		및 신한은행 동래점의 예금		A1/4
	채무	임대보증금	438,000,000	D1/4
		간병인미지급금	1,190,000	B1/4
	채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366,430	E1/4



별 지 목 록 1

(1) 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F 제6동 제402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23㎡

소유권대지권 : 4157900분의 3791

(2)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H아파트 제104동 제603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6층 제603호 철근콘크리트조 114.99㎡

소유권대지권 : 50362.6분의 45.12

(3) 토지 및 건물

- 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J 대 171.9㎡

- 건물 : 부산광역시 동구 J

조표P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5.88㎡ 2층 165.88㎡ 3층 134.86㎡ 4층 61.80㎡

(4) 토지

경기도 시흥시 M 대 276.8㎡ C 지분 11분의3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8-12

별 지 목 록 2

금융재산 : 693,082,452원

(1) 농협중앙회 부산대학교지점

① 보통예금 : 30,780,297원

② 저축예금 : 4,216,956원

③ 정기예금 : 657,000,000원

④ 미수이자 : 939,204원

합계 691,997,253원

(2) 신한은행 동래점 : 저축예금 1,085,199원 끝.